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장정희 의원)

의안 번호	24-32
----------	-------

발의년월일 : 2024. 2. .

발의자 : 장정희,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김승수, 김영미, 남해석, 신종갑,
오욱자, 이상원,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2023.10.26.에 마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였으며, 마포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제정된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 및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몇몇 공동주택 단지에서 마포구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하여 마포구에 제출하였음

나.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따라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제정권자가 아니므로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적법한 준칙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따라서 적법한 제정권자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해당 준칙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피해와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하여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이송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4. 붙임 :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하여 마포구청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

2023.10.26.에 마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였으며, 마포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제정된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 및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몇몇 공동주택 단지에서 마포구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해 마포구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제정권자로 규정한 자에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제정권자 이외에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적법한 준칙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마포구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준칙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에서 제정한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포구청장이 2023. 11.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보낸 공문에는 ‘개정하고’, ‘신고’ 하라고 하여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것을 사실상 ‘명령’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마포구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아야 하는 각 공동주택의 입장에서 해당 준칙을 ‘참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강제 적용’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마포구 측에 보내온 해당 준칙 철회 촉구 공문 등도 위와 같은 예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해당 준칙이 강제성을 띤 관리규약 준칙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철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본 준칙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피해와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제정권자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조속한 철회를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마포구에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조속히 철회하라.

하나.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철회에 따라 관리규약을 다시 제·개정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라.

하나. 마포구는 대구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4. 3.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